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III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0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 목차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4
제 1 조【목적】.....	4
제 2 조【용어의 정의】	4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5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5
제 4 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5
제 5 조【보험금의 청구】	5
제 6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6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7
제 7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7
제 8 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8
제 9 조【특약의 보장개시】	8
제 10 조【특약전환시 세부규정】.....	8
제 11 조【특약의 무효】.....	8
제 12 조【특약의 보험기간】	9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9
제 13 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9
제 5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9
제 14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9
제 15 조【해약환급금】	9
제 6 관 기타사항 등	10
제 16 조【소멸시효】	10

제 17 조【전환 전 계약 약관의 준용】.....	10
-----------------------------	----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1
----------------------	----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3
-------------------------------	----

0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보험계약에서 사망, 장애 또는 생존 등의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 자신이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전환 전 계약: 이 특약으로 전환을 신청한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시점의 총 이자금액

· 1년차 이자 = $\frac{100\text{원}}{\text{원금}} \times 10\% = 10\text{원}$

· 2년차 이자 = $\left(\frac{100\text{원}}{\text{원금}} + \frac{10\text{원}}{1\text{년차 이자}}\right) \times 10\% = 11\text{원}$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홈페이지(www.hanalife.co.kr)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이율: 제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연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공시이율 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라.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1)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전환일)부터 종신까지

(2)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전환일)부터 확정연금의 최종 지급일까지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약관 내 인용조문 참조)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생존연금을 지급(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개시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연금을 지급(확정연금형)

제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특약에 적용하는 이율은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금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0.5%인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5%) 이 아닌 최저보증이율(계약일 이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0.5%)로 부리 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지표와 외부지표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내부지표】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가중평균】

수치의 평균값을 구할 때 중요도나 영향도에 해당하는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평균값을 말합니다.

【국고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회사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life.co.kr)의 '상품공시실' 내 '전체상품 목록'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 공시'에서 공시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일 예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24년 10월 8일(화)인 경우 10/9(수, 한글날), 10/12(토), 10/13(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화)부터 3영업일인 10/14(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생존연금 또는 같은조 제2호에서 정한 연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임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설명】

분쟁조정신청은 전환 전 계약의 ‘분쟁조정신청’에 따르며, 분쟁조정신청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계약 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설명】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전환 전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전환 전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청약】

계약자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 ②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연금지급 형태	종신연금형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10년보증, 20년보증
	확정연금형
	3년~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형

- ③ 이 특약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④ 제8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모두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제4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민법」 제27조[약관 내 인용조문 참조]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 ⑥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4항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제8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개인연금형의 경우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합니다.
 2. 부부연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는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로 하며,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 ③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의 종피보험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 개시 이후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 ④ 제2항의 경우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연금형과 부부연금형의 계약자적립액 차액을 정산하며, 연금액은 전환시점부터 개인연금형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출생일이 전환 전 계약의 계약체결일 후인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제9조[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 전 계약(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특약전환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으로 전환시 전환일 기준 특약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므로 전환 전 계약 체결시 특약의 적용기초율(위험률,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사업비율)과 전환시점의 특약의 적용기초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험률】

개인이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질병에 걸리는 등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말합니다.

【사업비율】

보험료 중 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사업비율이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신연금형의 경우 전환 전 계약 가입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전환시점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이 큰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이 특약의 가입나이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제11조[특약의 무효]

- ① 이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전환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함)를 돌려 드립니다.

【설명】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 나이'라 함은 특약체결당시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가입가능한 나이를 말합니다.

【예시】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가입가능한 나이가 20세 ~ 70세인 상품의 경우

특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19세인 경우 ⇒ 무효

특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71세인 경우 ⇒ 무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고의】

자기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제12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이며,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전환시 선택한 확정연금형의 최종지급일까지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제13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 전 계약의 지급금(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제1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는 제외)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 이후에는 연금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5조【해약환급금】

- ① 이 특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때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은 공시이율로 하고,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금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및 해약환급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설명】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전환 전 계약 약관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환 전 계약 약관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존 연금 (제3조 제1호)	종신 연금 (개인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을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 용을 차감한 금액 - 보증기간: 10년, 20년
	종신 연금 (부부 연금형)	주 피보험자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을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 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 보증기간: 10년, 20년
		종 피보험자 주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이 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시점부터 보증지 급기간 이후에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의 보증지급기간 최종년도 연금액의 동일액
	상속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험료에 대한 1년동안의 이자액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전환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 해당일부터 연금액 지급 *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연금은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음
연금 (제3조 제2호)	확정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 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에 대 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 3년~5년, 10년, 15년, 20년

(주)

1.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연금지급개시나이 이전에 발생한 전환 전 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납입한 이 특약의 일시납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생존연금 및 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 및 연금도 변경됩니다.
3.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동안 연금개시후에 생존연금의 지

급을 보증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생존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6.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확정연금지급기간(3년~5년, 10년, 15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7.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3년~5년, 10년, 15년, 20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3년~5년, 10년, 15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상속연금형의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해당일부터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
9. 생존연금 및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0.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금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11. 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개인연금형은 피보험자, 부부연금형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의 모두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6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 관련)

구분	기간	지급이자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공시이율
생존연금, 연금 (제3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5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생존연금 및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제16조(소멸시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